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연구소), 서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내 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2010. 1. 25.자로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등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법률 제9961호, 2010.1.25.)에서 개정규정 시행일을 5년이 경과한 날(2015. 1. 26.)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3ha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사업, 50ha이상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으로 정하였다.

충청남도(○○○○연구소), 서산시, 태안군은 2015~2017년까지 총 9건, 1,219.88ha에 대한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자 선정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조합과 수의계약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숲가꾸기사업 현황

기관	년도	작업종	개 소	실 행 면 적 (ha)	계약방법		계약자	사업비 (천원)	계 약 기 간	준 공 일 자
					방법	법 조 항				
		합 계	9건	1,219.88				1,077,474		
산 림 자 원 연구소		소 계	2건	100				144,253		
	2017	덩굴류 제거	○○면 ○○리 산00-0번지 외 00	48.4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보령시 ○○조합	69,623	9. 1. ~10.20.	10.31.
	2017	덩굴류 제거	○○면 ○○리 산00번지 외 0	51.6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부여군 ○○조합	74,630	9. 1. ~10.20.	10.31.
서산시		소 계	3건	461.2				399,400		
	2016	덩굴류 제거	○○읍 ○○리 산00-0번지 외 000	61.2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서산시 ○○조합	89,600	10.18. ~11.26.	11.29.
	2016	덩굴류 제거	○○읍 ○○리 산0-0번지 외 000	200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서산시 ○○조합	153,000	6. 2. ~ 8. 6.	8. 5.
	2017	덩굴류 제거	○○면 ○○리 산00번지외 00	200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서산시 ○○조합	156,800	5.26. ~ 6.28.	6.28.
태안군		소 계	4건	658.68				533,821		
	2015	어린나무가꾸기	○○면 ○리 산000번지 외 00	39.29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태안군 ○○조합	69,888	11.23. ~12.21.	12.21.
	2015	덩굴류 제거	○○읍 ○○리 산00-0번지 외 000	324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태안군 ○○조합	166,526	6.25. ~ 7.24.	7.24.
	2016	덩굴류 제거	○○면 ○리 산00-00번지 외 000	195.39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태안군 ○○조합	151,522	6.21. ~ 9.30.	9.30.
	2016	덩굴류 제거	○○면 ○리 산000번지 외 000	100	수의 계약	「산림자원법」 제23조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	태안군 ○○조합	145,885	11. 7 ~12.19.	12.19.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15. 1. 26.부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합 및 ○○조합중앙회에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는데도, 2015~2017년까지 총 9건, 1,219.88ha에 대한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

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부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¹⁾에서 정한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종류별로 금액한도²⁾를 정하여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³⁾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1년 감사원의 산림청 기관운영 감사시 숲가꾸기사업의 수의계약 금액한도 관련하여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조문에 공사에 대한 정의가 없거나 공사 면허를 요구하지 않은 등 공사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숲가꾸기사업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공사가 아닌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에 해당되어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이 있었다.

또한 산림청 2015~2017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숲가꾸기 예산 집행 및 관리 분야) 및 충청남도 2015~2017년 산림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숲가꾸기사업의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예산군은 2014~2017년까지 총 37건, 2,292.1ha에 대한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종합과 전문공사로 나누어 건설공사를 정의하고 있고,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으로는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이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본문 내용 중 그 밖의 계약이 2016. 1. 15.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개정(시행 2016. 1. 15.)됨

를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공사로 보고 ○○조합, ○○사업
법인과 수의계약(8천만원이하)을 체결하여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 서산시장, 보령시장, 예산군수, 태안군수는**

[주의]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시 정당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체결하거나 수
의계약 한도를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